

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2. 1. 13 선고 2021가단57917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
말소등기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과 사람들
담당 변호사 우희창, 장지혜, 김종열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세나

피 고 B
변 론 종 결 2021. 12. 23.
판 결 선 고 2022. 1. 13.

주 문

1.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1981. 1. 9. 접수 제86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'청구원인' 기재와 같다.
2. 인정 근거 :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이강호

별지